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31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황운하 · 차규근 · 백선희  
김준형 · 정혜경 · 박은정  
전종덕 · 윤종오 · 손 솔  
서왕진 · 이훈기 · 김재원  
용혜인 · 신장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9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300만원”을 “300만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u>300만원</u>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39조(분할 납부) -----            -- <u>300만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50만원)</u>-----            -----            -----            -----.</p>